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08
----------	-------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김예지 · 박덕흠 · 이수진  
유용원 · 손 술 · 이종배  
김소희 · 고동진 · 안철수  
김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의지를 갖더라도 관련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업에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게임물 관

련사업자가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게임 이용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친화적 게임문화를 조성하며 게임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4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물에 접근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

제1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③ 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7. (생략)</p> <p><u>&lt;신 설&gt;</u></p> <p>8. (생략)</p> <p>③ (생략)</p> <p>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7의2.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u> <u>(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게임물에 접근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u> 보장</p> <p>8.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 ①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u> <u>장</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u></p>

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